

# PCT 국제출원 안내(完)

## 목 차

- I.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제도
- II. PCT 국제출원제도의 특징 및 유용성
- III. 국제출원절차
- IV. 국제출원수수료
- V. 국제출원 관련기관 정보
- VI. 국제출원의 출원서류 작성요령 및 예시

<전호에 이어 계속>

나) “Box No. I TITLE OF INVENTION”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짧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Box No. II APPLICANT”란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출원인을 기재합니다.

① “Name and Address”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 또는 명칭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공식 명칭을 기재하며, 주소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한 완전한 하나의 주소를 기재하되 국명 및 우편번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이 난에 기재한 출원인이 동시에 발명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This person is also inventor”의 □에 V표시를 합니다.

③ “Telephone No., Facsimile No. 및 Teleprinter No.” 난에는 전화, 팩스 및 텔렉스번호를 기재하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State(i.e. country) of nationality” 난에는 출원인의 국적을 기재하되 WIPO Standards ST. 3과 PCT Applicant’s Guide Annex A에 따른 2문자 코드로 기재합니다.

⑤ “State(i.e. country) of residence”란에는 출원인의 거주국명을 기재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존재하는 국가의 국명을 기재합니다.

⑥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난에는 상기 출원인이 어느 지정국에 대한 출원인 인지를 해당하는 □에 V하여 표시하되 한 가지만 표시해야 합니다. 이 난의 첫번째 또는 세번째 □에 V표하여 미국에 대한 출원인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상기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어야 합니다. 네번째 □에 V표한 경우에는, Supplemental Box에 지정국명과 함께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FURTHER) INVENTORS” 난에는 공동출원인 또는 발명자를 기재하되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① 이 난의 오른쪽의 “This person is” 난

에는 기재된 자가 출원인인지 발명자인지 또는 출원인인 동시에 발명자인지를 해당하는 □에 V표하여야 합니다.

② 그외는 2.의 가, 라, 마, 바와 같습니다.

마) “Supplemental Box”란은 기재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며 각 용지에는 원칙적으로 말소, 정정, 덧쓰기 및 행간 삽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①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에 V표하여 표시하고,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주소로 행해집니다.

②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첫번째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대리인과 대표자 중 어느쪽도 선임하지 않았으나, 특정의 주소로 통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고 마지막 □에 V표 하여야 합니다.

사) “Box No. V DESIGNATION OF STATES”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① 특정 계약국의 국내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국의 국명 앞에 □에 V표를 합니다.

② 유럽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EP앞의 □에 V표를 하고, 유럽특허조약 회원국중 일부만을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이외의 국가를 삭제하고 EP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P회원국을 EP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내특허로도 지정한 경우에는 양자에 대해서 모두 지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아프리카(OAPI)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OAPI 앞의 □에 V표를 하여야 하

며 OAPI 회원국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OAPI 회원국은 OAPI 특허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특허로는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조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타 종류의 보호 또는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타 종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 종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계약국의 국명 뒤 점선 위에 “petty patent” [소특허(호주의 경우에만 해당됨)] “utility model” [실용신안(브라질, 체코,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러시아연방, 슬로바키아, 스페인, OAPI의 경우에만 해당됨)], “inventor’s certificate” [발명자증(불가리아, 북한, 몽고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기재합니다.

특허에 추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체코, 덴마크, 독일,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만 해당됨)에는, 그 국명 뒤에 “and utility model”이라 기재합니다.

타 종류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타 종류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국의 국명 뒤에 “patnet of addition” [추가특허(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말라위, 몽고,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에만 해당됨)], “certificate of addition” [추가발명자증(불가리아, 몽고의 경우에만 해당됨)],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계속 또는 일부계속(미국의 경우에만 해당)]등을 기재합니다.

⑤ 이 양식 시행후 PCT계약국이 된 국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국명을 기재합니다. 기재한 국가에 대하여 지역특허 또는 조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종류의 보호 또는 취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명 다음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⑥ “Box. No. V”의 최하단에는 출원인의 안전을 위하여 위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지정국외의 모든 PCT계약국을 예비지정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이 예비지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XX로 삭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국제출원후에 지정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예비지정에 의한 지정확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지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일로부터 15월내에 출원인에 의한 지정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비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아) "Box No. VI PRIORITY CLAIM"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합니다.

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국명, 출원일 및 출원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선출원이 지역특허출원 또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이 제출된 관청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월내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인증사본(우선권서류)을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국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날짜는 서기 및 그레고리오력에 의한 일, 월명칭, 년을 기재한 후 괄호안에 일, 월, 년의 최후 2개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뒤에 마침표를 붙입니다.

【예】 04 September 1993(04. 09. 93)

타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 및 그레고리오력에 의한 일자를 병기합니다.

자) "Box No. VII EARLIER SEARCH"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선조사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국제조사기관이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선조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됩니다.

차) "Box No. VIII CHECK LIST"란에는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에 V 표 합니다.

카) "Box No. IX SIGNATURE OF APPLICANT OR AGENT"란에는 출원인이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타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날인합니다.

※일본어 출원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출원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의 간격은 적어도 5mm 이상으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4호문자 크기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후색으로 합니다.

출원서에 성명(명칭), 주소 또는 국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기재한 다음에 음역 또는 훈역에 의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 2. 명세서

###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① 용지의 상단에는 20mm 이상 40mm 이내

② 용지의 좌단에는 25mm 이상 40mm 이내

③ 용지의 하단 및 우단에는 20mm 이상 30mm 이내

나) 여백에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각 용지의 좌측(여백부분제외)에 5행마다 아라비아숫자로 연속번호를 붙입니다.

2) Description(명세서)에는 Request(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제목을 붙이고 기재합니다.

가) "Technical Field"(기술분야)  
발명의 관련 기술분야를 명시합니다.

나) "Background Art"(배경기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가능한 한 당해 기술에 관한 문헌을 인용합니다.

다) "Disclosure of Invention"(발명의 상세

한 설명)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과제 및 그 해결방법이 이해되도록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기술하고 그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가지는 유리한 효과를 기재합니다.

라)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마) “Best Mode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또는 “Mode(s)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형태를 기재하되 적당한 경우에는 실시예를 이용하고 도면이 있을 때에는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바) “Industrial Applicability”(산업상 이용가능성)

필요한 경우에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명시합니다.

3) 명세서에는 화학식 또는 수식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명세서에는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화학식, 수식 또는 표를 바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지를 가로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지를 가로로 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지는 화학식·수식 또는 표의 상단이 용지의 좌측이 되도록 세로로 철합니다.

6) 그 외는 출원서 기재요령1의 가에서 자까지와 같습니다.

### 3. 청구범위

1)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명세서의 최후 용지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입니다.

2) Claims(청구범위)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 간결하게 기재하되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청구항의 수는 발명의 성질을 고려하여 타당한 수로 하고, 청구항의 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청구항에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4) 청구범위에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명세서의...에 기재한 것과 같이” 또는 “도면의...도에 표시한 것과 같이”와 같은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기술적특징이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 다음에 관련 도면의 인용부호를 괄호로 묶어 병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종속항의 기재요령

가) 1 또는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함과 동시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합니다.

나)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하 “다수종속항”이라 한다)은 인용되는 청구항을 선택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다) 다수종속항은 다른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라) 동일한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은 가능한 한 인용되는 청구항 바로 뒤에 모아서 기재합니다.

마) 상기 나. 다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가 지정국의 국내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해 지정국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그외는 출원서 기재요령 1의 가에서 자까지 및 6 명세서 기재요령 6과 같습니다.

### 4. 도면

1) 일반적 사항  
가)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 및 좌단에 25mm, 우단에 15mm, 하단에 10mm를 둡니다.

나) 도면의 각 용지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는 사선으로 구분된 2개의 아라비아숫자로 이루어지며, 사선으로 구분된 좌측에는 용지의 번호를, 우측에는 용지의 합계수를 용지(여백 부분 제외)의 상단 중앙에 표시합니다.

2) 도면에는 이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물', '공기', '개', '폐', 'AB의 절단면' 등의 단어 또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도면은 지워지지 않는 흑색의 질은 먹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선명한 선으로 착색 없이 작성합니다.

4) 절단면은 평행사선으로 표시하되 인용부호 및 인출선의 판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5) 도면은 3분의 2 선축척에 의한 사진복제를 한 경우에도 모든 세부가 쉽게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명료성을 가지도록 작성합니다.

6) 도면의 척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식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7) 도면에 기재하는 모든 숫자, 문자 및 인출선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8) 도면중의 모든 선은 원칙적으로 제도용구를 사용하여 긋습니다.

9) 도면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을 이해하는데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그려야 합니다.

10)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3.2mm 이상으로 합니다.

11) 2매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면을 그리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에 도면중의 어떤 부분도 서로 가려지지 않으면서 하나의 완전한 도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12) 2 이상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면별로 용지의 번호와는 관계없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13) 도면에는 명세서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부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4) 도면에 다수의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용부호와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록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 그 외는 출원서 기재요령 1의 가에서 다까지, 사 및 아와 같습니다.

## 5. 요약서

1) 모든 용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청구범위의 최후에 붙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 또는 하단 중앙에 붙입니다.

2) Abstract(요약서)에는 그 요약서에 관한 국제출원을 선행기술로서 조사할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나)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다) 그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법의 요지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3) 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재하되, 영어로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중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괄호내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5)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 또는 용도에 관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그 외는 출원서 기재요령 1의 가에서 마까지, 사에서 자까지, 명세서 기재요령 1, 4 및 5와 같습니다. (♣)